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120
------	------

발의일자 : 2021. 8. 24.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김용술 의원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공유시설 무상사용(안 제4조)
-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1. 8. 24. ~ 8. 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금천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 하는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표창 등)**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타법개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 [ 약칭: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군·구 협의회
3. 읍·면·동 위원회